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720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720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가단44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신은숙, 오동현

변론종결 2022. 6. 17.

판결선고 2022. 8. 1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가단44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5. 접수 제33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아래에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는데, D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D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해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①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

D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1이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11이다.

갑 제2호증, 을 제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유일한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상속 개시 무렵 그 가액은 26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D의 특별수익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2009.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F에 설정해 주었고 D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망인이 2019.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에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G조합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채무자 D 대신 기존 근저당권자인 위 은행에 미변제 대출채무금 37,929,2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중 21,800,000원을 D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대위변제금과 D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 합계 59,729,200원(= 37,929,200원 + 21,800,000원)을 D가 특별수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망인이 D에게 합계 7,900,000원(= 2019. 11. 14. 지급액 2,100,000원 + 2019. 12. 31. 지급액 4,300,000원 + 2020. 1. 31. 지급액 1,500,000원)을 별다른 대가 없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7,900,000원도 D가 특별수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외에도 피고는, 망인이 2001. 1. 5.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주식회사 H(D가 대표이사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또한 D에게 특별수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D의 구체적 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 재산 268,000,000원 - 망인의 소극 재산 60,000,000원 + D의 특별수익 67,629,200원(= 59,729,200원 + 7,900,000원) = 275,629,200원

㉡ D의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 50,114,400원(= 275,629,200원 × 상속분 2/11) - D의 특별수익 67,629,200원 = - 17,514,800원

㉢ 법정상속분액 50,114,400원보다 특별수익액이 더 크므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다.

4) 소결

결국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 D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D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권순호, 판사 강희석

별지